

증거기반 입법정책과 과학적 입법설계를 지향하는 “LAW DATA”

LAW DATA는 법과 데이터의 만남을 시도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입법 영역에서도 'Fact'라는 지지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입법정책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연구위원), 송영선(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전문연구원)
백재현(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연구위원), 감대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연구위원)¹



I. LAW DATA의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

올해 법제조사평가연구실에서 새롭게 선보인 LAW DATA는 한마디로 법과 데이터의 만남을 시도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법과 관련한 논증은 주로 상식이나 논리, 또는 전문가의 권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는 일방향에서 쌍방향, 나아가 다방향인 네트워크 하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주장이 다량의 사실적 정보와 국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더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가치판단에 있어서 '사실'의 중요성에 대한 주목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외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인 CNN의 Reality Check, JTBC의 팩트체크가 주요 코너로 등장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이 재판의 승소를 가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적 논증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의 중요성에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LAW DATA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LAW DATA는 분기별로 최근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법률을 선정하여 해당 입법과 관련된 입법의 필요성, 사안의 심각성, 국민들의 관련 의견, 관련 입법이나 사건들에 대한 통계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왜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입법의 배경과, 목적, 절차, 제개정 결과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입법의 명분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집중 분석 대상 입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안정보의 텍스트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선정한다. 해당 법률에 대한 제안이유의 핵심 이슈에 대해 현 상황을 확인하고 입법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의 도출,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의 추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통계,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LAW DATA는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데이터 정보의 전달방식에 있어 디자인과 시각적 방식의 강화하였다.²

III. 주목할 만한 입법: “산업안전: 위험의 외주화”

이번 4월호의 주제는 최근 김용균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를 다룬 “산업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에 관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조사통계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안의 제정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된 국가통계를 보면,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고이며, 최근(2017년) 1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957명, 재해자는 89,848명이라는 통계가 있으며(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이는 하루에 5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LAW DATA, April 2019, 4면)

1.

LAW DATA는 필자(기획총괄)를 비롯하여, 법제조사평가분석실 실원인 송영선(언론데이터, 법령데이터, 편집발간), 백재현(조사와 통계 및 설문조사), 감대영 연구원(텍스트 데이터 등 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자동화)들이 공동으로 기획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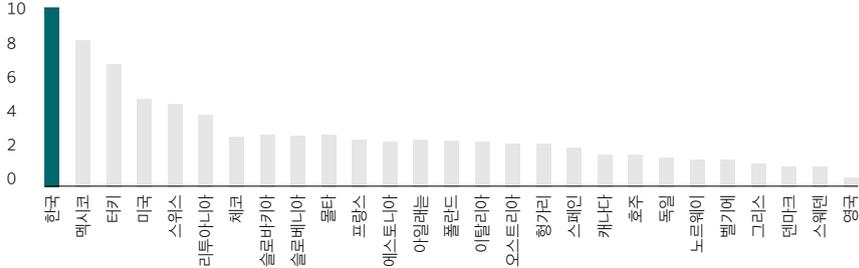
LAW DATA는 데이터 시각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작가를 발굴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는 OECD 국가 중 1위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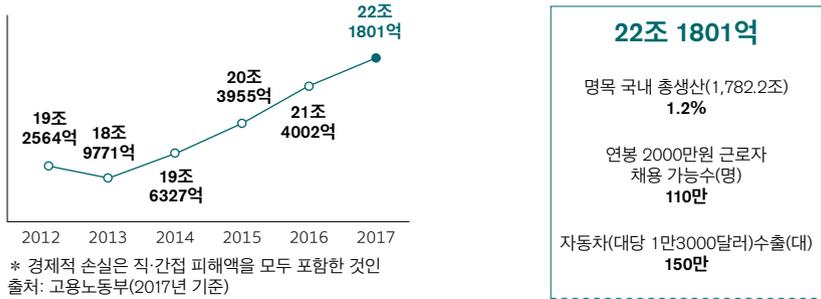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5년 기준)

또한 제안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된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18조 9771억에서 2017년에는 22조 1,801억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그리고 이는 명목 국내 총생산의 1.2%에 해당하는 큰 손실임도 알 수 있다.(LAW DATA, April 2019, 4면)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 추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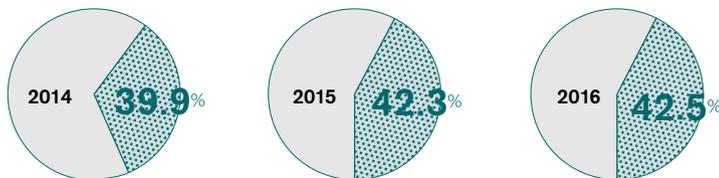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데이터를 보면, 법의 보호로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산업재해발생률로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이 80.73%이고(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전체 산재 사망자의 39.9%(2014), 42.3%(2015), 43.5%(2016)로 그 비율이 높음은 물론,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 소속 비율



출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관계부처 합동

사실상,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산재처리를 한 비율이 7.2%인 점(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조선업의 경우))이나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경험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39면, LAW DATA, April 2019, 6면, 20-21면).

산재보험 처리 이유

| | 응답자수 | 백분율(%) |
|-------------|------|--------|
| 산재보험으로 처리 | 9 | 7.2 |
| 원청비용으로 공상처리 | 5 | 4.0 |
| 하청비용으로 공상처리 | 70 | 56.0 |
| 개인부담 의료보험처리 | 35 | 28.0 |
| 치료안함 | 6 | 4.8 |
| 계 | 125 | 100.0 |

산재보험 미처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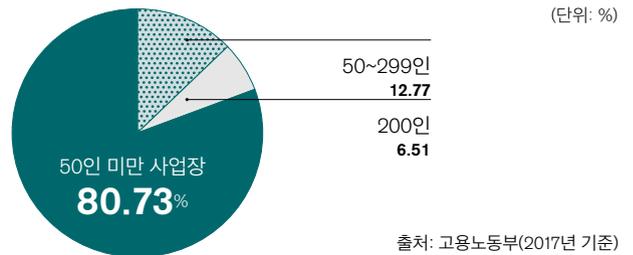
| | 응답자수 | 백분율(%) |
|------------------------|------|--------|
| 산재보험 처리하면 보상이 적어서 | 7 | 3.7 |
|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 79 | 42.2 |
| 하청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못하게 강요해서 | 52 | 27.8 |
|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못하게 강요해서 | 18 | 9.6 |
| 산재보험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9 | 4.8 |
| 하청업체(물량팀)이 산재보험 미가입이라서 | 7 | 3.7 |
| 기타 | 15 | 8.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조선업 조사 결과

죽음의 시각지대

사업장 규모별 재해 현황



IV. LAW DATA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LAW DATA는 주요 최신 입법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의 의의를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입법설계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 할 수 있도록 의미있고 참신한 정보의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LAW DATA, April 2019>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